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 상품 안내서

1.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이란?

의사 또는 전문의료인이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의사 또는 전문의료인의 과실 위험으로부터 의사 및 병원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배상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안정적인 치료활동의 보장을 도모할 수 있고, 환자의 입장에서는 불의의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료 사고의 각종 원인

1. 진단 및 진찰	• 응급환자에 대한 오진으로 인한 초기치료 실패 • 건강진단에서 암 등의 조기발견 실패로 인한 질병악화
2. 치료 및 시술	• 수술과정 자체의 사고 및 수혈, 주사, 마취행위상의 과실 • 응급처치, 제왕절개 및 일체의 치료 및 처치행위의 과실
3. 처방 및 투약	• 잘못된 처방전, 환자의 특이성을 파악하지 못한 처방의 과실 • 투약과정에서 약사의 착오 및 과실로 인한 조제과실
4. 장비, 의료인 관리	• 각종 의료기구의 점검부주의, 사용사의 과실 • 간호사, 간병인,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주의사항 미비

2. 가입대상 및 상품의 특이사항

1) 가입대상

전문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제3자의 신체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병원들 (개인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이 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이 상품의 보험기간(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은 통상 1년이며, 보험료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1년 초과 3년 이하 계약 체결 가능)

이 상품은 소멸성 순수보장성 보험이므로 만기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병원 내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간호사, 의료기사 및 기타 의료종사자를 모두 피보험자로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3.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 상품소개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발생하는 의료사고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약관	조항	명칭	보장내용
보통 약관	기본 조항	의료과실조항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법률상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중재비용 등)
		일반배상책임조항	- 병원시설소유관리자/생산물/주차장배상책임 - 인수제한-별도 상품(영업배상, 생산물)으로 가입
특별 약관	선택 조항	주요 특별약관	-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특별약관 - 경호비용 특별약관 - 벌금 특별약관 -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 특별약관 - 초빙의 및 마취의 특별약관

4. 주요 보상하는 손해 vs.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 비용 -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단, 보험증권상 소급보장일자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오염사고로 인한 배상청구 및 오염제거 비용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청구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 - 계약상 가중책임 및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 - 공인되지 않은 특수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생긴 손해 - 재물손해 - 후천성면역 결핍증 및 간염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5. 주요 보장의 종류 및 보험금지급사유

구분	선택특약	보험금지급사유
기본조항	보통약관 • 의료과실조항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생긴 우연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선택특약	경호비용 특별약관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난동 및 부당한 보상강요에 대비하여 사건처리 수습, 조정을 위해 피보험자와 회사가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료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필요 타당한 경호비용을 지급
	초빙의 및 마취의 특별약관	기명피보험자의 초빙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하거나 보조한 사람(마취의사 포함)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함
	형사방어비용 특별약관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보험가입 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함

6. 기타 알아두실 사항

Q)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에 가입하는 절차는?

A) 병원 단위 별로 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자의 자필(직인)이 날인된 당사 양식의 질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질문서에는 병원 내 각종 정보(의료종사자들 내역 등)를 기재하게 되며 보험료 산출기초가 됩니다.

Q) 병원 내 음식물로 인한 식중독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도 보장받으려면?

A)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Q) 병원내의 시설위험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A) 네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에서는 전문인과 관련한 위험만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시설위험은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적 면책사항

-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의 고의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스카이 다이빙 등을 하던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보 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